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005
번 호	235

2018. 12. 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페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입안내용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0 = 114			면 적 (m²)			ш-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계	4,378	-	4,378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78	감) 4,378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4,378	4,378	100.0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조서

¬ ы	니서며	시설의	01+1		면 적 (n	1²)	최초	ш¬
구분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원	-	증)4,378	4,378	-	공원지하 중복결정

□ 입안사유

○ '북서울 꿈의 숲' 인근 오동근린 공원 내 위치하여 공원경관 저해

및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오현적환장에 대해 적환장 지하화를 통한 친환경청소업무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 강북구내 적환장 대체부지가 없어 기존시설 지하화하고 상부 공원 복원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3.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공원

4. 주민 의견청취

○ 열 람 기 간 : 2017. 6. 1. ~ 6. 15.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공 고 게 재 : 일간신문(중앙일보, 아시아경제), 구보 등

○ 의견청취결과 : 제출의견 없음

5. 관련부서 협의의견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시 투자심사('16.11.17.) 결과 '실시설계	• 투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기본 및	반영
	전 2단계 심사 실시' 조건부 추진	실시설계 시 반영·재검토 후 실시	
	결정 되었음	설계 전 2단계 심사 실시	
	· 지반굴착 등 기존 지형 훼손이 수반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지반굴착,	반영
서울시	되는 바, 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지반조사에 대한 세부조사 시행 후	
구를 기 공원조성과	결과의 검토·반영 및 이를 최소화	적정 시설규모 산출 등 면밀히 검토	
	하기 위한 적정 시설규모 산출 등에	하겠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공원훼손지	· 공원훼손지 복원계획 사업비 산정시	반영
	복원계획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기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녹지 및	

사업비 반영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각 도시계획 -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없도록 지상부 공원에 상충되지 않는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시설을 최소화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하며, 재원 조달계획에 누락된 지상부 공원조성 사업비 반영이 필요함	보태닉 가든 조성으로 사업비를 산출 하며 지상의 훼손지는 지형을 복원 하고 기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녹지	
지하 중복결성 시설이 지상부 공원을 반영 협의하겠음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상부 공원에 상충되지 않는	반영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을 추진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서울시 및 강북구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이행 요함 공원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원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서울시 및 강북구 공원관리부서와 협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이행하겠음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반영 반영
서울시 시설계획과	이용 및 향후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할 것	최소한의 시설(계단실 등)만을 지상부에 계획하여 공원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시설배치계획에 대해 시·구 공원관리부서 협의 및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적의 계획안을 도출하겠음	
	· 공사기간 중 적환장 기능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 현 시설용량 유지 및 부지의 최소화로 공사 중 현 사업부지를 활용할 수 없음에 따라 공사 중에는 '강북 재활용 선별처리시설(번3동 115-10)'에서 현 적환장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반영

6. 강북구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 2017. 9. 6.

○ 의견청취결과 : 가결

7.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개최일 : 2017. 6. 28.

○ 자문결과 : 원안동의

8. 확경성 검토

- 현재 사업부지에서 수행중인 생활쓰레기 적환기능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으로 인한 생태면적, 녹지훼손, 비오톱 등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적환장 지하화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로 분진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9. 기 타

- 재원조달계획
 - 개략 사업비 : 293억원(시비, 푸른도시국)
 - · 폐기물처리시설 264억원/공원복원 29억원

10. 검토의견

□ 개요

- 이 의견청취안은 강북구 오현적환장(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원, 부지면적 4,378㎡)을 지하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중복결정하려는 것으로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같은해 10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대상지는 오동 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이 인접한 가운데, 생활쓰레기 적환의 악취·경관 등의 민원이 지

속됨에 따라, 해당 적환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복원 코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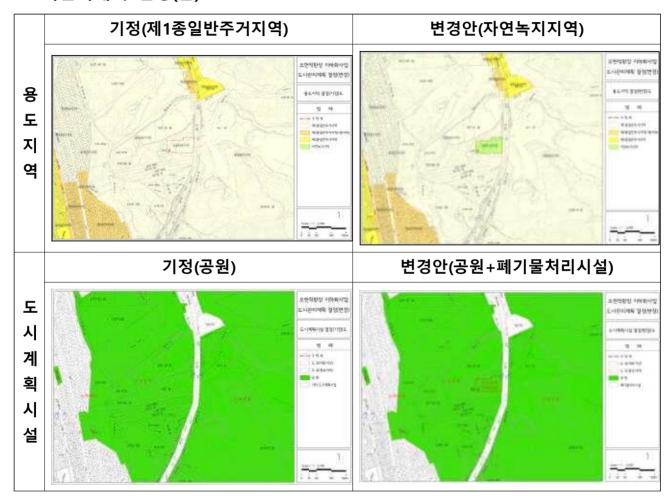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페기물처리시설은 현재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 할 수 없음에 따라(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제7호, 붙임1)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공원) 지하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중복 결정코자 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수직적 중복결정시 기존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 른 운용기준, 붙임2), 기존시설(공원) 관리부서인 서울시 공원조성 과 협의 결과, 지형훼손 최소화와 공원훼손지 복원계획 구체화, 시 투자심사('16.11.17.)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투자심사 결과(공원조성과)>

일시	2016.11.17.(목)	
사업명	오동근린공원 훼손지 복원사업	
부서명	공원조성과	
	〈조건부 추진〉	
	○ 공원 훼손지 복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	
	○ 현 시설용량(65톤/일) 수준의 규모 사업비만 시에서 부담하고, 시설	
심사결과 및 내용	용량을 늘릴 경우 자치구에서 부담하여 추진	
	○ 현지 지형을 고려할 경우 지반굴착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어서	
	면밀한 현장조사가 필요	
	○ 상기 조건을 이행하고 실시설계 전 2단계 심사 실시	

※ 폐기물처리시설 비교 (자료: 시설계획과)

구 분	현재	계획(안)
부지면적	$3,542\mathrm{m}^2$	$4,378\mathrm{m}^2$
연면적	_	$8,129m^2$
시설용량	115톤/1일	135톤/1일

□ 추진경위와 쟁점사항

-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 복원사업'은 적환장의 악취·경 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그 동안 강북구가 검토해 온 적환장 이전은 진척이 없는 관계로, 서울시가 특별교 부금을 교부하여('15.12.) 강북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푸른도시국)는 오동근린공원 훼손지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붙임3).
 - 그러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17.11.) 지형훼손 문 제 및 공원의 이용가치 등을 사유로¹) 이 사업에 대하여 부동

의하였고, 사업대상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업에 반발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적환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한('17.9.) 강북구는 아파트 주민들의 강한 집단민원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하는 대신현상유지를 하되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하여 악취 민원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사업 추진의 합의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서울시(도시계획국)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오현적환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채, 즉,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공원을 점용 훼손하고 있는 현재 상황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 시설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더불어 공원복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계획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연유한 것으로 이해됨.

"적환장 지하화 vs. 이전"

○ 당초, 이 사업은 적환장 이전을 추진해 왔음에도 진척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적환장 이전을 계속 검토하기 보다는 차선 책으로 적환장 지하화를 도모한 것으로 보임. 즉, 적환장을 이 전할 수 있는 대상지가 전향적으로 물색되지 않는 한, 이 사업 을 변경하거나 유보할 타당성은 부족하다고 사료됨.

다만, 관련 위원회의 자문결과와 집단민원, 그리고, 수백 억원

¹⁾ 자문결과 : 공사 시행에 따른 지형 훼손 및 구조적 안전성, 구조물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와 공원으로서의 이용가치. 확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부동의함

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감안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전 '적환장 이전 대상지의 적극적인 재검토'와 '인근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바로 인근의 재활용선별장(공원내 위치)을 적환장으로 임시 사용할 계획인데, 재활용선별장으로 적환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유사 기능의 집적화로 토지이용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오현적환장이 공원 존(zone)의 사실상 중앙부에 위치하여 시설을 지하화하더라도 폐기물 운송 등 공원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반면, 재활용선별장은 비교적 공원 존의 외곽에 위치하고 공원 내부에 입지하여 주변 주거시설과도 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으므로, 지상의 적환장 시설 조성 또는 적환장 기능 수용을 위한 지하시설물의 확대 등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정리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이 사업의 합의 형성을 위하여 '적환장 이전 대상지의 적극적인 재검토'와 '인근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여전히 적환장 이전에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강북구와 서울시는 현재 상황 개선을 위한 이 사업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

〈붙임1〉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원칙, 종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원칙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4편 제7장 제3절)

- 1. 시·군내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 2. 처리장은 발생량의 분포에 따라 각 시설이 보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처리장은 무질서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입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정하여진 장소에서만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시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처리장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 1.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폐기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

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 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 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 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계곡·공유수면매 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 6. 당해 시·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 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 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 이 2천톤 이하인 시설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 8. 삭제 <2004.12.3.>
- 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일반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폐기물처리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

-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위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2〉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관계법령 및 서울시 방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 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 - 중복·입체적·공간적 범위결정 기준 (행정2부시장 방침 제422호, 2010.12.30.)

Ⅱ. 수직적 중복결정 운용기준

- 적용원칙
- 모든 시설간 수직적 중복결정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시설 관리부 서(기관)와 협의하여 결정
- 시설유형별로 수직적 중복결정 가부(可否)에 대한 기준을 운영하기 보다는 사안별 적정성 판단을 원칙

■ 적용기준

구 분	수직적 중복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간 상호 적합성	혐오시설 등 기존 시설의 본래 기능을 저해하거나 그 기 능이 상충되는 경우 불허
물리적 설치 가능성	구조적 한계로 타 시설과 수직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 우 불허
개별법에 의한 설치 가능성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인 경우 불허

〈붙임3〉오현적환장 지하화 등 조성사업(자료: 강북구)

□ 오현적환장 일반현황

○ 위 치: 강북구 오현로 103(북서울꿈의숲 서문 옆)

○ 대지면적: 3,542 m²(시유지)

○ 사용개시일: 1997.10.28.

○ 시설현황: 적환시설(생활, 반입불가, 폐목재 등) 및 압축기, 계근대 등

□ 지하화 조성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5.12. ~ 2020.12.

○ 규 모: 면적 4,378 m²(연면적 8,129.6 m² / 지하1, 2층)

- 지 상: 공원(훼손지 복원)

- 지하1, 2층: 적환시설

○ 사 업 비: 29.326백만원(전액 시비)

- 폐기물처리시설 26.446백만원

- 공원복원 2.880백만원

□ 추진현황

○ '15.11.: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410,000천원)

○ '15.1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강북구)

○ '16.11.: 1.2부시장 연석회의

- 강북구 오현적환장 지하화는 시책사업인 오동근린공원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시책사업으로 푸른도시국에 예산편성 등을 통해 추진

○ '16.11.: 오동근린공원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계획 수립(市 공원조성과)

○ '16.11.: 市 투자심사(조건부 동의 - 실시설계비 14억원 반영)

- 현 시설용량(65톤/일) 수준의 규모 사업비만 시에서 부담하고, 시설용량을 늘릴 경우 자치구에서 부담하여 추진
- 상기 조건을 이행하고 실시설계 전 2단계 투자심사 실시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14억원(2017년 예산)
- '17.05.: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의견: 공원 내 적화장 지하화 조성사업 적극반대 및 이전요구
- '17.0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區 → 市 시설계획과)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지상부 공원, 지하부 폐기물처리시설)
 - ※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rightarrow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17.11: 市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부동의)
 - 자문결과: 공사 시행에 따른 지형 훼손 및 구조적 안정성, 구조물의 유지관 리 등의 문제와 공원으로서의 이용가치,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부동의함
- '17.12.: 오현적환장 지하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강북구)
- '18.01.: 도시공원위원회 부동의로 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어려움으로 부동의 해소 재자문 요청(市 시설계획과 → 區)
- '18.03.: 市 도시공원위원회 안건(자문) 재상정 요청(區 → 市 공원조성과)
- '18.03.: 도시공원위원회 부동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시공원위원회 재상정 반려(市 공원조성과 → 區)
- '18.03.: 市 현안회의 개최(市 시설계획과)
 - 시설계획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부동의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불가
 - 공원조성과: 도시공원위원회 부동의는 법적효력이 없는 자문결과일 뿐 도시 계획시설 결정 후 재상정하여 심의를 받으면 됨
- '18.04.: 도시계획시설 절차이행 추진 요청(區 → 市 생활환경과)

- '18.10.: 시의회 의견청취 상정 안건 제출(市 시설계획과)
- '18.11.: 市 현안회의 개최(市 시설계획과)
 - 생활환경과: 자치구당 적환장 1개소는 필수시설로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반 드시 필요
 - 공원조성과: 도시공원위원회 부동의 자문 결과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 정하면 후속 조치 가능
 - 시설계획과: 공원복원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부동의 된 도시공원위원회 재자무 선행 필요

오현적환장 지하화 조성사업 관련 민원사항

- '17.06.: 번동동문아파트 주민대표 면담(강북구)
 - 오현적환장 지하화 공사 추진 반대 및 이전조치 요구
- '17.06.: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 추진 반대민원(市 응답소 3건)
- '17.08.: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 추진 반대민원(市 시설계획과)
- '18.08.: 오현적환장 관련 민원(市 생활환경과 2건, 區 1건)
 - 오현적환장에서 악취가 나고 미관상 좋지 않아 공원 방문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혐오감을 주고 있으며 지하화 공사 추진 반대 및 이전조치 요구
 - 번동동문아파트 주민대표들이 시장님(구청장님)과의 면담 요청

※ 오동근린공원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방향

〈 부서별 업무분장 〉

- 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 공원복원사업 추진
 - 공원복원사업 관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자문
 - 지상부 공원복원사업(설계, 공사) 추진
- 기후환경본부(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사항 추진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 주관 및 관련절차 이행
-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